

“법조인의 자질, 능력 돋보이는 의정활동 해달라”

변협 제19대 법조인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100여명 참석해 성황 법치주의 정착 위한 정치, 한국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정치 다짐

19대 국회에 진출한 법조인이 한 자리에 모여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 발전 기여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변협(협회장 신영무)은 24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신기남 민주통합당 의원 등 의원들과 김두현 전 변협 협회장 등 법조원로,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을 개최했다.

신영무 협회장은 “1년여 변협 협회장을 해보니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며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는 정치이니만큼 굳건한 의지와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미래를 생각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면서도 기반은 법조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법치주의 정착이며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안보도, 발전도, 사회통합도 법치주의 정착없이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조인 국회의원들이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배사에 나선 황우여 원내대표는 “법조인의 특성은 잘 듣는 것”이라며 “제가 어떤 의견도 귀담아 들을 줄 알게 된 것은 의뢰인을 대하며 훈련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인의 특성, 장점이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신나고 기분 좋은 남자, 신기남”이라고 소개한 신기남 의원은 “국회의원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장 잘 훈련된 직업군이 변호사인데 이

번 19대에서는 너무 적어졌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국민과 사회 속에 천착하고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영 의원은 “법조인 국회의원이 당선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4선 이상이 새누리당 2명, 민주통합당 3명에 불과할 정도”라며 사법개혁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추진해 나갈 법조인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다른

건배를 제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참석자들은 19대 의원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보이고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기원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koreanbar.or.kr】

지역에 비해 동료들의 지지 성원이 부족하고 무관심해 서운했다는 점을 토로했다.

김두현 전 변협 협회장은 “위하여(興)를 할 수도 위하여(野)를 할 수도 없느니 ‘위해서’로 하자”며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첫 인정

대법 미쓰비시 상대소송 파기환송

대법원이 사상처음으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5명의 피해자가 낸 소송이지만 24일 대법원 판결로 15만명으로 추산되는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소송을 내면 배상액은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가로챌 피와 땀의 대가를 돌려주는 게 정의’라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일

본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제피해자의 배상을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이근목씨(86)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나2254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와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구 미쓰비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비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었다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지 않았다 봐야한다”고 밝혔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 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함과 동시에 위 판결을 계기로 일본 책임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新법조시대 개막 “스마트 소송 체제” 돌입

스마트 소송

법률분쟁에 관한 변호사 무료진단 (특허출원)
내 사건이 소송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고객은 PC나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소송의뢰”

법률 시장도 스마트 시대의 흐름에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대한민국 법률 시장에서

국민도 웃고, 변호사도 웃고, 정부도 함께 :)
이것은 무엇일까요?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이 무료로 제공합니다.

로시 스마트

소송가능사건만
슬라보는
재미에 빠지다



변호사는 PC나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건수임”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한다

국가지식재산위,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허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삼성-애플 소송 등 국내외 특허분쟁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관할 법원이 이원화되어있어 동일한 특허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나올 수 있고, 특허·기술 전문가의 소송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번 토

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박성준 진흥관이 이번 논의의 배경 및 이슈를 소개하며, 한상욱 변호사가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를 통한 IP 허브 구축’에 대해 발표한다. 이밖에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 각계 전문가 6명이 패널로 참석해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 문

제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우리 측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며 “로스쿨 제도를 통해 전문 지식과 소송기술을 함께 가진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된 현 시점에서, 특허·기술에 대한 전문성만 갖춘 변리사들에게 소송참여 확대 기회를 주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변협은 토론회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토론회 참석자에게는 2시간의 전문의무연수 이수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연말까지 ‘특허소송 관할 집중’과 ‘소송대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로스쿨 1기생

실무수습 중이라도 변리사 등록 가능

법제처에 의견 보내... ‘6개월 이내 수임은 불가’ 전제

대한변협이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전달했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로서 6개월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아 변호사법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 등록을 신청해 올 경우 이를 보류 또는 반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왔다.

로스쿨 1기생의 경우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고, 변리사법 제3조 제2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얼핏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21조의 2와 제31조의 2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률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만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수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문제다.

변리사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에서는 “변리사는 산업재

산권법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특허법원 등의 사건을 수임하여 특허소송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법에 따라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는 변호사가 같은 사건을 변리사로 등록해 수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사건 수임을 하지 못한다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도 변리사 등록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변협에서는 “변리사법에는 변리사 등록거부 사유 중 하나로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변호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리사 등록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자가 변리사 등록을 하고 사건수임을 할 경우, 사건수임행위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사건수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사건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변협, 통합진보당의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 개탄

대한변협(협회장 신영무)은 25일 최근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합진보당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통합진보당이 출범할 때만 해도 다수의 국민이 그들의 용기와 개혁의지를 믿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으나 총선 후 통합진보당 경선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이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이 드러났을 때 당 스

스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기대했으나, 드러나지 않는 한 그 허물을 감추어도 된다는 식의 당 지도부의 잘못된 생각으로 진보정치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합진보당이 보여준 불투명한 국가관과 진보정당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종북주의 논란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인정하되 국

민의 정치적 함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은 이번 경선부정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변명과 폭력으로 얼룩진 기성 정치의 반목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진보정당으로 거듭나 그들을 신뢰하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사 25時
-239-
(변호사는 진실을 말한다)
변호사 이영욱

한미일 3국의 변호사가 만났다.
우리 미국 변호사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건 우리 일본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케시마는 우리 일본 땅이죠.

우리 한국 변호사들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정말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친구 처럼 여긴답니다~

차별화된 광고!
여기, 「대한변협신문」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2087-7754

전시·전후 남북자 송환 촉구 세미나

대한변협은 6·25 전쟁과 이로 인해 파생된 남북 사건의 원인과 실태, 과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여러 현상과 문제들을 법적인 분석과 판단에 의해 남북관계의 본질, 한반도 평화정착과 인권문제 개선의 조건, 통일노력의 지향점 및 송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6·25 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에서 국가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세미나 참석 시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일 시_ 2012. 6. 20.(수) 14:00~17:20
- 장 소_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진행순서

- 14:00~14:10 <개회식>
전체사회 정학진 북한인권소위원장 / 축사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
- 14:10~15:40 <1세션> 전시남북자 문제
- 사회 김태훈 변호사
- 발표 제성호 교수 / 6·25 전쟁 남북 진상규명의 법적 의미와 과제
오경섭 박사 / 전시남북자 문제의 현안과 해결방안
- 토론 이미일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회장
정소운 통일부 이산가족과장
정재훈 변호사
- 15:40~15:50 휴식
- 15:50~17:20 <2세션> 전후남북자 문제
- 사회 이재원 변호사
- 발표 김웅기 변호사 / 전후남북자의 귀환실태와 송환방안
구본학 교수 / 전후남북자 문제의 현황과 대책
- 토론 이영임 변호사
최성용 남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수영 외통부 인권사회과장

변호사가 사는 법



김태섭 변호사

검찰에 근무할 때 인사이동이 있을 때면 묘한 경험을 하곤 했다. 환송식을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관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서는데, 마무리할 일도 있고 짐정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는 바로 다시 청사로 들어온다. 그런데 떠난 지 10분도 안 되어서 돌아오는데도 어딘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그날 아침까지도 출근했던 의

한다. 물론 에너지 절감은 꼭 필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세금으로 유지되는 관공서에서 국민의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심코 5부제에 걸리는 차를 몰고 온 사람들은 방호원으로부터 엄청난 죄라도 저지른 듯한 취급을 받으며 문자 그대로 쫓겨나야 한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법원이나 검찰에 애정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한때는 법원 중앙 출입구를 관용차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적도 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무거운 기록을 든 채 택시를 타고 왔다가 멀리서부터 걸어와야만 했던 여성 변호사 한분은 아직도 그 얘기를 한다.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 법조를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법원이나 검찰청을 반가운 마음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없다. 송사란 누구에게나 걱정되는 일이고 실제로 스트레스로 병을 얻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본다. 아무리 친절한 대접을 받아도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원하던 것과 다르면 좋은 기분을 가지기 힘들다. 그

관공서, 문턱 좀 낮추면 안 되겠니

속한 사무실이 그새 달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사표를 내고 떠날 때는 그런 느낌이 훨씬 강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공무원이 이렇진대 관공서를 드나드는 일반인들은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출입문이 달라졌지만 예전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에는 철문이 달려있었다. 대검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육중한 철문과 마주 서게 된다. 초임검사 시절 업무로 중수부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문을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위축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검사가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하물며 조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잠긴 문 앞에서 얼마나 겁을 먹을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변호사로서 법원과 검찰청을 출입하다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드나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다. 우선 차량 5부제부터 민원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럴 때 관공서 특유의 작은 권위주의는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반대로 작은 존중과 배려가 잔뜩 흐렸던 기분을 활짝 펴게 해줄 수도 있다.

흔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기관으로 알려진 곳에 근무하다 보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조금은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 변호사로서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과 검찰이,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헤아리고 문턱을 낮춰서 어쩔 수 없이 약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

kts@lawkh.com

사설

법조인 국회의원에 바란다

대한변협은 24일 19대 법조인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을 가졌다. 험난한 선거전을 치르고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

우리생활의 사소한 여건에도 정치가 영향을 미친다. 하다못해 거리의 화장실이 깨끗해져 편해지는 것도 정치의 힘이다.

법치주의가 박제된 구호가 아닌 생활의 원리가 되려면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국회가 입법화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게 중요한 국회에 이번에 법조인이 42명이 진출했다. 지난 국회의 60명에 비해 3분의 1이 줄어든 숫자다. 18대 국회의 법조인들이 훌륭한 평가를 받지 못한 영향도 있고 법조인 전체가 국민에게 실망감을 준 탓도 있다.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은 많으면서 돌려준 것은 없는 법조인의 모습이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이다.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의

55%가 변호사 출신이고(미국 변호사협회 2011년 4월 1일 통계), 역대 대통령은 43명 중 25명이 변호사였다. 그만큼 법조인은 정치에 친숙하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국회로 간 변호사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과 생활 속의 실천, 공적 사명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말이다. 법의 정신을 머리에 담되 국민의 아픔을 가슴에 담아 헤아리는 19대 법조인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변호사들이 국회로 진출한 동료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충실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어 줄 필요가 있다.

정치후원금을 연 10만원까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갑남을녀의 작은 소망으로 정치를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다. 동료들이 힘을 내서 좋은 법을 만들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성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변협신문 ©2012 2000년 3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6743

대한변호사협회 발행인 신영무 협회장 편집인 엄상익 공보이사 인쇄인 최낙관

대표전화 02) 3476-4000
팩시밀리 02) 3476-2771
기고·기사제보 02) 2087-7752
구독·광고문의 02) 2087-7754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전자우편 news@koreanbar.or.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Phone Number, and Fax Number. Includes departments like 총법, 무과, 과과, 인회, 권원, 과과, 연홍, 수과, 사보, 심사, 사업, 기획, 국제, and 과과.

대한변협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30회 통일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대한변협은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제30회 통일정책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2년 5월 29일(화) 오후 5시
● 장 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
● 주 제 :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의 신권력구조와 평가
● 강 사 : 한기범 박사(고려대 북한학과 객원교수, 前 국정원 차장)

※ 본 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통일법조찬포럼, 통일정책세미나는 본 협회가 실시하는 변호사 의무연수로 인정(회당 1시간)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업기획과 Tel (02)2087-7772, Fax (02) 3476-2771

변협만평

이우정



제20회 변협 포럼 지상 중계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 편

“새로운 시대에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



※ 대한변협은 지난 24일 변호사회관에서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초청, 제20회 변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강연 내용을 발췌 요약해 소개합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민주주의라고 대답한 사람은 20%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70%가 넘는 사람들이 경제성장을 언급했다. 저는 이것이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생각한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상대인 정동영 후보를 530만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인정받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에서 사회양극화가 가장 심해진 시기가 이 때이기도 하다. 경제문제에 대한 고

통, 불만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됐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그렇지 못했다.

외형적으로 보자면 한국 경제는 괜찮아 보인다. GDP가 세계에서 12~13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GDP 증가율 역시 비슷한 경제규모 국가 중에서 나쁘지 않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매우 좋지 않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득양극화 관련 통계를 봐도 그렇다.

나는 2012년 대선에서도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경제문제의 실체는 악화돼 가는 양극화 문제다. 우리사회에서 소득과 교육, 건강 등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과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다.

그 점과 관련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복지경쟁’이다. 너도나도 더 많은 복지를 부르짖고 있다. 나는 보편적 복지론자이지만, 보편적 복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앞뒤 재지 않고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복지의 비중은 늘려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더욱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분배 과정에서 굴곡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복지다. 그런데 애초에 굴곡을 덜 지게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일자리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 문제 해결은 난망하다.

그렇다면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과거와는 경제적 지형이 달라졌다. 더 이상 경제 성장과 대기업, 수출만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인물이나 지역을 무기로 한 정치세력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당이 한편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많은 관심과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위한 맞춤 취업정보사이트 오픈

실무 노하우 나누는 실명·익명 게시판도 운영

6월 1일 변호사를 위한 맞춤 취업정보사이트가 개설된다. 대한변협이 법무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예비법조인의 미래설계를 위한 파트너로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 온라인사이트(career.koreanbar.or.kr)는 변협 취업정보란과 사법연수원 진로정보센터, 사내변호사협회의 Job-posting 등에 산재되어 있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수집해 제공하는 유일한 변호사 취업정보사이트다.

이 사이트의 장점은 구인, 구직자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구직 희망자는 ‘구직자 서비스’에 이력서 등록 후 희망하는 곳에 입사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채용자가 구직자의 리스트를 보고 마음에 들 경우 이력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용정보의 경우 지역별, 직급별(신입, 경력, 인턴십), 경력별(법무법인, 기업, 공공기관, 법률사무소 등), 기업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조건 검색이 가능해 구직자에게 꼭 맞는 일터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내기 변호사와 선배 변호사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커뮤니티’ 내 실명·익명게시판을 만들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실무 경험 및 노하우 등을 나눌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변호사 업무매뉴얼, 각종 서식, 기재례 등의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단,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 가능하다.

이정원 변협 사업이사는 “회원 여러분의 구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특히 자료실에 서식 및 업무매뉴얼을 DB로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니 본 사이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바로잡습니다

제399호 변협신문 9면에 게재된 ‘고전에서 배우다’의 필자를 제주회 김승석 변호사에서 대구회 김규석 변호사로 바로잡습니다. 두분 필자께 사과드립니다.



김규석 변호사

www.rainbowlaw.or.kr

결혼이민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온라인법률상담센터

www.rainbowlaw.or.kr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다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국 100여명의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분야별로 상담 해드리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의 법률구조로 연결해드립니다.

상담 분야

- 국적법
- 출입국관리법
- 결혼중개업법
- 형사법
- 민사법
- 가사법
- 행정법
- 기타

상담 방법

www.rainbowlaw.or.kr 로 방문

원하는 언어선택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 선택)

공개 상담 혹은 비공개상담으로 상담 글 게재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답변 도착 알림)

변호사 답변 완료

성년후견제도와 변호인 양성 방안 논의

“변협·법무부·법원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 업무협조시스템 구축 필요”

대한변협 노인법률지원위원회 산하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가 6월 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년후견제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은효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지방 변호사회의 역할, 성년후견인(변호사) 교육양성안’을 주제로 경기 중앙회 활동소개 및 성년후견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는 지적·발달장애 인이나 치매노인 등 일정 부분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후견

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후견업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충분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성년후견인을 교육, 양성, 관리 및 감독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다, 그 개념도 생소해 세무사항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은효 변호사는 “변호사라 하

더라도 성년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후견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호사와 관련된 성년후견인의 교육·양성 등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에서 주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와 법원, 지방변호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전문직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회원은 대한변협 인권과(담당 임혜령, 02-2087-7733, hello@koreanbar.or.kr)로 문의.



“한국, 유엔 권고 이행 위해 적극 나서야”

변협, 정부 UPR 보고서 작성 위한 NGO 간담회 참가

법무부는 2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제2차 국제인권 보고서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가 유엔의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및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제출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 국제앰네스티, 공익법센터 어필, 참여연대-CIVISUS 등 UPR 보고서를 제출한 7개 NG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4월 변협의 ‘인권보고서’를 기초로 국내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한 첫 UPR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변협의 발제자로 나선 김병주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은 유엔에서 2008년 UPR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시 논란이 되었던 정보인권과 관련해 변협의 의견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금융거래나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며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부칙에서 기존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역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 UPR 심의 시 다뤄져야 할 의제이나,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 결정이 났다”며 “중재신청 등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7, 8월에 제2차 UPR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타당한가 영화진흥위원회 콘퍼런스

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는 29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영화음악의 공연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간 영화계와 (사)영화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벌여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강진명 변호사가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의 법적인 문제점과 영화산업과 음악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다.

프로스포츠산업 분쟁해결 공동 세미나 건대·대한상사중재원 공동주관

건국대학교와 대한상사중재원이 6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프로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분쟁해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미국 등 프로야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인프라를 논의하는 자리로, 프로야구 선수협회의 법적 성격 및 기능, 프로야구 연봉 분쟁의 해결 방안, 일본 프로야구 선수노동조합 및 에이전트 제도에 관한 연구, 프로선수들의 이적문제와 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사무국(담당자 김지현 02-2149-1680)으로 문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사장에 신현윤 연세대 법전원장 선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4대 이사장에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선출됐다. 신 이사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를 졸업하고, 한국경쟁법학회장과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을 역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회원이며, 로스쿨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자율적 협의·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차가운’ 법조인들이 쓰는 ‘따뜻한’ 사람 이야기

대한변호사협회 휴먼 감성 문학지 The WAY [더 웨이]



인터뷰
‘뽀로로 아빠’ 김일호 대표를 만나다 / 윤배경

테마코너·내 인생의 로또
평범하게 열심히 살다보니 / 성중탁
어디서 본 듯하지만 하나뿐인 내 얼굴 / 이찬희

CARTOON
내 가슴의 멍들 같은 사건 / 이영욱

단편소설
연극배우 / 정진

사건과 사람들
8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법 / 염상익

.....

■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02-2087-7751
■ 구독료 : 1년 12,000원(납권 3,000원)



패러다임 한·미 FTA'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박재완 장관은 "한·미 FTA는 포스트 무역 1조 시대를 견인할 큰걸음이자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 한·미 관계 발전 및 경제 전반의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면서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전국각적인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FTA에 대비해 국내 농어업 분야 등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2008년부터 이미 추진해왔다"며 "재정과 세제 등을 총망라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회, 박재완 기재부 장관 FTA 강연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옥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 지난 2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글로벌시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산회, 제9회 법률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장준동)는 지난 1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관에서 기업체 40여곳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법률강습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강습회에서는 박기원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기업회생·파산에 관련된 법

률문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이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부산회는 기업 경영상 발생하지 모르는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기업-1고문변호사제' '법률강습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 법원 측 인사와 위철환 경기중앙회장, 장성근 제1부회장 등 변호사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기중앙회는 소송 지휘권 행사와 시차제 및 기일변경, 형사 재판 시 형사합의를 위한 재판진행이나 국선변호인 선정, 전자소송시스템, 소송기록 열람복사, 법원 자료 이용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수원지법에서는 전자소송 활성화에 협조해줄 것과 가사 사건에서 종합적으로 요약한 준비서면을 마련해줄 것, 형사 사건에서 항소이유 등 피고인의 주장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경기중앙회, 수원지법과 간담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위철환)는 지난 21일 호텔캐슬 나무홀에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서기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기석 법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 등 14명



대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종기)는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4월분 성금 580만원 중 사회복지법인 성림아동원과 제16회 대구오픈 국제휠체

어테니스대회에 각각 200만원,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150만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만원을 기탁했다.

☞ 동정

● 결혼

▷백중현 변호사(서울회·79년생) 본인, 이미지 변호사(서울회·83년생) 본인 = 5월 26일(토), 02)772-2863, 2029-3587

▷부봉훈 변호사(서울회·53년생) 삼녀 혜진 = 5월 27일(일),

02)593-3115

▷김태환 변호사(서울회·47년생) 장남 윤호=6월 9일(토) 낮 12시 천주교 한강성당, 02)539-9400

▷채주엽 변호사(서울회·71년생) 본인=6월 10일(일) 낮 12시 30분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 02)2005-6108

● 부음

▷고훈 변호사(서울회·65년생) 빙부상=5월 21일(월), 02)772-4000

▷김용진 변호사(서울회·53년생) 모친상=5월 22일(화), 02)532-3700

▷이문재 변호사(서울회·43년생) 모친상=5월 24일(목), 02)593-3801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시행 안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제화·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 하며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법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처리 과정

- ① 신청 접수(우편·방문)
- ②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 검토
- ③ 심사결과 상임이사회 상정 및 의결
- ④ 신청자 결과 통지(등록증 교부·대한변협신문 공시)

◆ 신청 분야(최대 2개 등록 가능)
-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등록 유효기간: 5년

◆ 등록 신청비: 1개 분야당 100,000원

※ 협회(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0-353899,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로 등록신청비를 송금하시는 경우, 입금여부를 협회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우편번호: 137-885

◆ 연락처

- 전화 02)2087-7721, 팩스 02)3476-4008
- 이메일 jdchang78@koreanbar.or.kr
- 담당자: 주임 양희창(법제과)

충북변호사의 특별한 이야기



이태화 변호사

참으로 많은 것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절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변화속도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이고, 우리의 재판제도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영이가 황혼을 난다고 하지만, 정신세계가 물질문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용케도 잘 살아왔다는 안도의 한숨도 쉬어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변화와 혁신은 존재하여 왔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없이 역사는 존재할 수 없고, 그 변화와 혁신의 추세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편승하거나 변화의 방향을 선도한 사람들만이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옛 선인들의 글을 읽다 보면, 종종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젊은이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것에 한탄하고 염려하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현재의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시대는 변화도 없고 정체되어 있었으며 세대 간의 의식차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과거의 어느 때에도, 따라잡기 힘든 변화와 혁신이 있었던 듯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 급격한 변화와 혁신도,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그 정도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눈부신 물질문명의 발전은 확실히 이전 시대 2000년의 변화보다도 극적이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습니다.

자동차와 비행기의 발명, 우라늄의 상용화, 라디오와 TV의 대중화, 무엇보다 PC의 발명은 인류 문명사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고, 이들이 변화시킨 지금의 모습은 그 이전의 지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고, 그 속에 사는 인간에게도 똑같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과연 이 지구와 인류가 그와 같은 변화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이고, 이는 곧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섬뜩한 예감도 느껴집니다. 물론,

불의 발명이나 봉건제도의 붕괴 등이 있었던 당시의 인류가 느꼈을 충격의 정도도 비례적으로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21세기 변화의 정도와 속도는, 절대적으로 제도나 철학을 압도하는 것만은 틀림없을 듯싶습니다.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신이 죽은 바로 그 자리에 과학이 인간의 신으로 대체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100여년 전인 20세기 초까지도 인간의 일생을 50세까지로 보았다고 합니다. 40여년 전까지만 해도 현직에서 은퇴하면 얼마후에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노후생활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

다. 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빛보다도 빠르고 역사의 소용돌이는 그 어떤 강력한 쓰나미보다 위협적이어서, 그 속에서의 개인은 한낱 흔들리는 낙엽에 불과하여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벅찬 희망으로 전율하면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고자 치열하게 살아온 족적들이 기록되어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를 느끼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이 일상일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과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존재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 숙명이고 사물의 본질입니다.

이미 모든 조건은 주어졌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듯싶습니다. 사법시험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감각을 가진 다른 모습의 법조인들이 대세를 이룰 것입니다. 법조 3역의 총원방법도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법제도의 변화나 법조 외부에서의 법조에 대한 변화에의 압박이나 그 기대수준을 가능하고 이를 따라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듯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이미 모든 조건과 상황들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변화와 혁신은 역사의 본질이어서, 외롭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인 것을...

thlee8008@daum.net

정말 빠른 변화에 관한 단상

다. 그러나 현재는 은퇴 후의 삶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극적이고 급격하다고 하거나, 그 안에서 살고있는 그 순간에 이를 느끼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0년 혹은 20년이 흐른 후에 '문득 참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저 길을 걸어왔지' 하고 깨닫는 것이 일반인들이고, 이때 변화의 속도라는 것도 뒤늦게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와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그 변화의 껍새를 인식하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결

지방네트워크 부산회



김외숙 변호사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우리모임)'은 1995년 3월 27일 부산교원공제회관에서 김기재 당시 부산시장과 15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하였다. 돌아보니 변호사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그때, 예상 밖으로 큰 출범식에서 가슴에 꽃을 달고 행사장에 앉아 진땀 흘리며 여색해 하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는 오랫동안 성폭행을 저질러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별거뱓겨진 채 갈로 위협당하다 영겁결에 남편을 살해한 여교사 사건 등이 터져 나오면서 그동안 우리사회가 얼마나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병들어 있는지 세상이 알아가던 때였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새로 결성되거나 조직을 정비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1990년 2월부터 상담활동을 해 오던 부산기독교상담센터가 1994년 9월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부산지부로 전환하고 지역여성들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해 오고 있었다. 우리 모임은 부산여성의 전화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법률상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곳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자발적으로 구상하고 모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부산여성의 전화 이승렬 초대대표가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이승렬 대표는 근사한 출범식 행사를 마련해 주었는데 어찌 보면 앞으로 사회봉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이기도 했다.

출범 당시 우리 모임은 허진호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류도현·윤여진·정운·김옥태·박영주·강동규 변호사와 나 이렇게 8명으로 시작했다. 1995년 4월 3일 첫 상담을 시작으로 우리 모임은 매주 월요일마다 부산여성의 전화가 마련해 준 장소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부산여성의 전화는 매주 미리 광고를 내고, 무료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접수하여 신청자들이 월요일에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다. 변호사들은 그냥 상담만 하면

되도록 상담 전후의 사소한 업무처리를 부산여성의 전화 실무자들이 죄다 도맡아 주었던 것이다. 지금은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단체나 기관들이 흔하지만 당시에는 부산여성의 전화처럼 시스템을 갖추고 움직이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때 부산여성의 전화가 만들어 놓은 업무 매뉴얼이 이제는 여성단체나 상담소 등에서 거의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월요일마다 부산여성의 전화와 연계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해 온 지 올해로 만 17년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 모임의 변호사 수도 배로 늘어나 지금은 15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제 보니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준동 변호사도 우리 모임 소속이다!

우리 모임이 나이를 먹은 만큼 모임에 속한 변호사들도 중량감 있는 인사가 되었음을 새삼스레 발견한다. 우리 모임이 바뀌었듯 부산여성의 전화도 대표와 실무자들이 계속 바뀌었다. 그렇지만 둘 사이의 유대관계는 이승렬 초대대표가 주춧돌을 놓은 이래 오랜 우정처럼 유지되어 오고 있다.

17년간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바뀌는 것을 보아왔

다. 출범 초기만 해도 상담실을 찾는 이들이 호소하는 주된 이슈가 폭력과 외도였다면, 이제는 여성들이 성생활의 불만을 호소하기도 하고 아주 가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남성이 찾아오기도 한다. 과거에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며 헤어져도 아이는 절대 못 준다던 부부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서로 아이를 상대에게 떠넘기려고 애쓰는 씩씩한 장면도 제법 보게 되었다.

비슷한 눈으로 돌려 보면 우리 모임의 출범 초기와 달리 이제는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상담소나 복지관이 아주 많아졌고, 초창기보다는 우리 모임의 상담실적도 줄어들었다. 초기에는 밀려드는 상담신청자들 때문에 월요일 귀가시간이 아주 늦어졌고, 한 번은 앉은 자리에서 거의 4시간을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연이어 14명 정도를 상담했던 일도 있었는데, 요새는 상담 신청자가 두세 명에 불과한 월요일도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슬슬 피를 부리며 상담신청자가 한두 명이면 상담 장소를 부산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당번 변호사의 사무실로 변경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모임의 변호사들은 부산 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성폭력으로, 혹은 법률의 무지로 고통당하는 여성들이 있는 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 릴레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임의 구성원들이 하나 둘 은퇴하더라도 밀려오는 후배들의 물결이 정말 세상이 좋아질 때까지는 그 릴레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싶다.

busandike@yahoo.co.kr

17년의 무료법률상담 릴레이

연재소설

글 : 윤상일 변호사 / 삽화 : 이준섭 교수

렉스 휴마노스 “의식 불명일 뿐 뇌사 아니었다”

안락사 ①②③④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속행된 재판에 공정문 검사는 한미레가 요청한 대로 차기남이 병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의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연했다.

이영숙이 누워있는 병실에 들어온 차기남은 늘 하던 대로 호흡, 맥박, 혈압 등을 체크한 후 이영숙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영숙 곁으로 다가갔다.

화면의 상태가 그리 선명하지 않고 옆모습으로 비춰져 차기남의 표정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웠으나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 이영숙에게 다가간 차기남은 가만히 두 손으로 이영숙의 오른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가 차기남은 간이의자를 병상 옆으로 가져와 이영숙 옆에 앉은 다음 다시 이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다.

차기남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영숙의 옆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화면의 주인공들이 모두 움직이지 않자 이를 바라보는 재판부와 배심원들 그리고 방청객들도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법정은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이영숙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차기남이 천천히 이영숙의 손을 내려놓고 얼굴로 손을 뻗어 어제 보았던 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 같았다. 어제 보았던 장면이 재연되자 공정문 검사는 이정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동영상을 중지시켰다. 이정희 재판장은 무거운 법정분위기를 의식한 듯 공정문 검사가 동영상 자료를 회수하는 동안 배석들과 작은 소리로 뭔가를 상의했다.

“피고인, 지금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환자의 손을 잡고 한동안 기도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한 거죠?”

이정희 재판장은 바로 피고인에게 물었다. 어려운 결정을 한 순간을 다시 생생하게 확인한 다음이어서 그런지 차기남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마음속으로...이영숙씨의 손을 잡고 제 생각이 과연 옳은지 이영숙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영숙씨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차기남의 목소리는 젓어 있었다.

“그래서 이영숙의 뜻을 확인했습니까?”

재판장의 물음에 차기남은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인! 이영숙의 뜻을 확인했는지 물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영숙씨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숙씨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차기남은 작지만 또렷하게 대답했다. 이정희 재판장은 검찰관과 변호인에게 동영상 자료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검찰 측 증인을 신문하기로 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비타병원의 부원장인 송기신 교수였다.

“증인은 송기신 교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증인이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전공분야라든지, 현재 하는 일 등을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공정문 검사의 넓적하게 각진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여유까지 느껴졌다. 다른 때와는 달리 증인 스스로가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것도 마치 재판부와 배심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듯이.

“예, 그럼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대학교를 비롯한 10여개 의과대학 신경정신과의 외래교수를 겸임하고 있고 비타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한신경외과학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분야는 신경외과 중에서도 특히 뇌신경분야입니다. 최근 본인의 논문이 JAMA에 실려서 우리의 의학 수준이 선진국 못지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송기신은 말끝마다 본인을 강조하며 자신의 직위와 업적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송 교수님, 최근 송 교수님의 논문이 JAMA에 실렸다고 했는데 그냥 JAMA라고 하시면 배심원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 JAMA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까? JAMA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머리글자를 딴 이니셜로서, 미국에서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를 말합니다.”

송기신은 영어를 발음할 때 유난히 혀를 많이 굴렸다. 아마도 미국에서 오래 공부한 것을 과시하려는 듯하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몇 가지 교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문은 노련하게 송기신의 비위를 잘 맞춰주며 신문을 끌어가고 있었다.

“우선 증인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이 사건 환자에 대해 담당주치의인 피고인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사망하게 하였는데 혹시 부원장인 증인에게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보고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아니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 증인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까?”

“예, 그렇지요. 본인이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사건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과 진료차트 상으로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환자의 회복가능성은 어느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까?”

“예에...당시 환자는 의식불명상태가 8개월 정도 지속된 상태였는데 주치의를 비롯한 전문의사들의 소견은 10% 미만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 환자가 이른바 뇌사상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뇌사라는 것도 그 개념에 대해 학설이 대개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현상의 중추인 뇌간의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를 말하는 ‘뇌간사설’과 둘째, 정신기능을 담당하는

대뇌의 기능 정지 시를 말하는 ‘대뇌사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간을 포함한 모든 뇌의 기능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전뇌사설’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뇌사판정은 반드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의사 2인 이상 포함된 뇌사판정 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뇌사상태도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뇌사상태는 아니었지만 8개월 정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발 호흡은 불가능한 상태였는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장기간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으니까 환자 가족들이 연명치료의 중단, 즉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환자 가족들은 열성적으로 치료에 임했고 의식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증인은 혹시 환자의 가족들이 주치의인 피고인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송 교수님의 고견을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뇌사판정을 받은 바도 없고 환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한번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직하는 날 밤에 임의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전문의인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정문의 질문에 대해 거침없이 대답하던 송기신도 마지막 물음에는 쉽게 대답하지 않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를 비롯한 배심원들은 그런 송기신의 입을 숨죽이며 바라보았다. 송기신은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환자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타병원이나 본인으로서도 정말 전혀 예상하거나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같은 전문의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송기신은 또 다시 한숨을 내리 쉬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모습이 참으로 처연하여 불쌍하게까지 보일 정도였다. 이에 비해 차기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송기신의 증언을 경청했고 표정변화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미레는 배심원들 앞에서 잘못된 표정을 짓는 것이 좋다고 누누이 강조했던간 고개를 푹바로 하고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차기남이 알밋기까지 했다.

〈사정상 연재가 잠시 중단됩니다. 나머지 분량은 추후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편지



김치중 변호사

세월 보내고 돌아보면 남는 건 사람뿐이라고 하던데, 이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좋은 기억이 많이 쌓여있는 것이 그런대로 잘 보낸 인생이란 뜻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잡지나 신문에 실린 회고담을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에 대한 눈물겨운,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좋은 기억들에 대한 것들이다. 물론 그 글을 쓴 이의 삶이 온통 그런 기억들로 가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기억과 대비하면 내 기억은 왜 이리 삭막한지 조금 쓸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판에 직업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건 당사자들과 의뢰인들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더욱 삭막하게 만든다. 법조인으로 일하면서도 흐뭇한 기억이 없지는 않을 텐데, 유독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람들은 판사 시절 끝을 모르는 집요함으로 나를 질리게 만들었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최근 작별한 불편했던 의뢰인까지 좋지 않은 기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좋지 않다는 것은 윤리적인 판

단은 아니고 내가 불편했다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조금은 이기적이기까지 한 판단이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을 더듬다 보니 문득 그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이 느껴진다.

그것은 유독 오래, 선명하게 기억나는 불편했던 사람은 대부분 그들이 나를 몹시 불편하게 했다는 공통점 외에도, 그들의 끈질긴 주장에 조금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나나 나와 같은 쪽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개업 초기에 만났던 의뢰인 중에는 자신은 사기 범행에서 사소한 일을 거들었을 뿐인데

가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는 아주 솔직한 이유를 내세우며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고 가족을 시켜 시위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바람에 한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졌던 괴로운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변호사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괴로웠던 기억이었지만 얼마가 지나자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해프닝으로만 기억에 남았다. 그냥 별사람도 다 있다는 정도의 기억으로만 남고 내 삶에는 별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하여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되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으나, 게다가 그 이유라는 게 내가 가해자임을 보여주는 사정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의뢰인을 대하는 자세는 조금 타협적으로 되었다. 처음에는 역지사지로 이해할 만한 구석이 없는지 탐색해 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없을 리가 없다. 남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능히 이해해 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마당에 용서를 할 수는 없고 정상참작사유로 삼아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 달래가며 '이 또한 지나가리'를 읊조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안 되면 옛날에 치워버린 '국방부 시계' 라도 꺼내어 시곗바늘 돌아갈 것을 지켜볼 수밖에. 그리고 나서 기억속 삭막한 화폭에 불편한 얼굴 하나 추가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만이겠지' 해도 남의 싸움에 끼어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변호사의 운명 때문인지, 아니면 과욕을 버리지 못해서인지 매년 한두명씩은 그런 기억이 늘어난다. 나쁜 놈은 그냥 나쁘기만 하고 억울한 사람은 그냥 억울하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일인 것도 같다. 사실 그 이유야 아무래도 좋다. 다만 이제 자꾸 단조로워지는 기억인데 더 늦기 전에 좋은 느낌의 얼굴로 기억을 채우고 싶고, 안 되면 그동안 채워진 불편한 얼굴이라도 하나씩 내리고 싶다. 누구와 지난날을 이야기할 때 좋은 얼굴들을 떠올리며 듣는 사람이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kcjlmh@barunlaw.com

늘어가는 불편한 기억들에 대한 해석

주범이 달아나는 바람에 주범으로 몰렸다면 억울해하는 피고인이 있었다. 변명도 그럴듯했지만 그 의뢰인과 부인이 푸념처럼 들려주는 사랑이야기에 혹해서, 이런 사랑을 한 사람들이 다른 범행도 아닌 사기죄를 저지러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변론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합의서를 받아 내려 노력까지 했었지만 주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세상 물정을 모르면서 변호인 말을 전혀 믿지 않는 재판부를 탓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주범임을 당당히(?) 밝히며 체포되지 않은 다른 중범을 공감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고, 처

새기려면 기억 속의 쓴 물이 올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는 그가 그런 불편한 행동을 하는 데 조금은 이해해줄만한 구석이 있는 경우이다. 차마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 쪽 누군가의 잘못이 그가 그런 행동에 나아가게 하는데 일조를 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내게 가장 불편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은 나를 괴롭혀 미워 죽였는데 뭔가 개운치 않은 사정으로 편하게 미워할 수 없는 이유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는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무작정 비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생겼다. 뭔가 그럴만한

생각하는 숲



박수연 변호사

일단 변호사증후군을 앓게 되면 마이너스 카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 기념으로 은행권에서 한도 넉넉하게 발급해 준 마이너스 카드는 연수원 시절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일등공신이고, 마이너스로 왔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변호사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인 까닭이다. 마이너스 대출로 주식 투자도 하고, 전세금도 내고, 유학도 다녀온다.

변호사증후군의 또 다른 증상은 삶의 '질'에 대한 까다로운 취향이다. 산림동 시절엔 2500원짜리 뷔페 음식도 없어서 못 먹었던, 이젠 '호텔 스테이크는 물린다'는

에 기초한 자기최면에 가까운 바람이다.

변호사개업 이후, 경증의 변호사증후군을 앓던 친구 한명은 어느 날 퍼뜩 깨달았다고 한다. 분명 매월 수백만원의 월급을 받고 회의로 명목으로 들어오는 여윳돈도 적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면 돈이 쌓이는 게 정상인데, 어찌 된 일인지 통장엔 마이너스 대출만이 늘어난다. 힘들게 일하고도 모이는 게 없으니 일하기도 싫고 스트레스만 커져가던 친구는 고민 끝에 원인을 알아냈다. 변호사증후군을 가볍게 생각한 자신이 바로 주범이었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궁상맞게 원룸에 살 수 없으니

은 가족의 공유물처럼 되었으며, 돈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뎠다고 한다.

현실 타개책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친구가 선택한 방법은 금전출납부를 쓰는 것이었다. 일단 매달 버는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수첩에 짹짹 줄을 긋고 입출금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두달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니 역시 '마이너스 대출'과 '카드 할부'가 문제였다. 대출과 할부의 치명적인 유혹으로 변호사증후군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사치품 구입이 급격히 늘어났던 것이다. 절약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친구는 결국 집세가 싼 곳으로 이사를 했고,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품위유지비는 없다는 굳은 결심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월급에서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의 대부분은 대출금 상환에 썼지만, 동시에 적금도 몇 개 들었다. 돈 벌어서 빚만 갚다 보면 오늘도, 내일도 마이너스라 쉽게 포기할 수 있기에 조금씩 불어나는 적금액을 보며 마음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전출납부 예찬론자가 된 친구의 권유로 나도 금전출납부를 쓴다. 습관이 들기까지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한달만 써보아도 확실히 얻는 게 있다. 우선 그동안 나도 모르게 그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람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진다. "레자가 뭐 어때서?"

sypark@seoulbar.or.kr

레자가 뭐 어때서?

말이 자연스레 나온다.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은 꼭 나가줘야 하고, 품위 유지 차원에서 웃이나 가방은 좀 블링블링해야 한다.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 골프도 가끔 쳐줘야 하고, 배우자도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최소한 전문직 이상은 돼야 한다.

변호사증후군 증상의 결정판은 변호사에겐 한방이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다. 이 모든 마이너스 대출과 카드 대금이 큰 사건 하나를 수임함과 동시에 한방에 해결될 것이라는, 과거 변호사 황금기 세대의 수많은 사례

마이너스 대출을 끌어다가 오피스텔 전세금을 냈고, 변호사가 사교에 무관심할 수 없으니 골프도 배웠고, 변호사가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니 골프채도 최고급으로 샀다. 최고급 골프채를 격 떨어지게 경차에 실을 수 없으니 관찮은 자동차도 무리해서 할부로 구입했고, 돈 잘 버는 변호사를 키워낸 부모님과 친척들의 기대를 생각해서 가족 대소사마다 상당액을 쾌척했다고. 이로써 매월 들어오는 월급의 상당 부분은 은행 이자로 몽땅 잘려나가고, 마이너스 통장

몇 년 전 변호사회에서 행사기념품으로 연갈색 서류가방을 나눠준 적이 있다. 품질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쉽게 들고 다니기 편해서인지 요즘 그 가방을 들고 법정에 드나드는 변호사들이 종종 눈에 띈다. '변호사 책가방'으로 불리는 그 가방을 들고 가면 법원 직원들도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아 사실 편하다. 헌데, 그 가방을 선물로 받고 되레 기분 나빠한 변호사들도 꽤 있었던다. 한 젊은 새내기 변호사가 가방을 받아보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변호사가 무슨 레자야?"

많은 변호사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앓고 넘어가는 병이 있다. 일명 '변호사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병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나, 핵심은 "나는 변호사니까"로 요약된다.

Interview

국제중재 최고전문가 김 갑 유 변호사

“한국변호사 중재 실력과 함께 커왔을 뿐”

너무 성공한 것처럼, 이제 갓 신살인 변호사가 너무 다 이룬 것으로 보일 때 무엇을 물어 봐야 할까? 오히려 그게 걱정이었다.

김갑유 변호사.

국제중재 부문에 있어 자타공인 국내 최고임을 넘어 미국중재협회(AAA)의 상임위원,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 등 세계 3대 국제중재기구 상임위원으로 모두 선임되는 세계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청년변호사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롤모델, 김 변호사를 만나면 그의 성공 이유를 캐내야겠다고 다짐하며 법무법인 태평양의 접견실에서 만났다.

“대구 태생이시죠?”

“아, 네. 뭘 그런 걸. 고조 때부터 본적인 대구 종로 약령시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2남 2녀의 막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컸죠. 형님은 한의사를 하고 계신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의사를 하라고 많이 권유하셨어요. 그땐 한의사가 별로 인기도 없을 때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판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고1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꼭 판사가 되어야 한다 결심했었죠.”

그는 사법시험을 두 번 치렀다. 대학 3학년 때 처음 치른 1차 시험이 떨어져 4학년 때 1차를 준비할 때 2차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동차로 덜컥 합격해버렸다. 300명 중에 200등 정도라 판사임관이 어렵겠다고 생각해 다시 시험을 치렀다. 그가 첫 번째 합격으로 연수원에 들어갔더라면 판사가 됐고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 김갑유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수원 2년 차일 때 판사임관 기준이 바뀌었고 연수원 성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두 번째 시험으로 들어간 연수원에서 그는 수료 당시 임관순위가 2번째였다.

대학원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게 된 아르바이트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지금은 광장이 된 한미합동에서 리서처로 일하다 ‘눈을 뜨는’ 경험을 한 것이다.

“그야말로 ‘이런 비즈니스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시보를 하면서 판사, 검사 일을 결합하되나마 알고는 있었는데 당시로선 생소한 국제법무를 접하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지’ 라는 걸 알겠더군요. 내성적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따갈까,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이 컸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 제가 왜 그랬는지... 아들이 판사가 되기를 기대하신 할머니를 비롯해서 주변의 반대가 무척 심했어요. 다들 저를 걱정하셔서 그러신 것이었지만 참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법대 81학번이다. 맞다. 졸업정원제 1세대. 160명 정원이 300명으로 갑



자기 늘어나고 정원미달사태가 났다. 340점 만점에 컷 라인이 186점. 80학번들이 후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81학번. 그가 고3이던 여름, 전격적으로 대학입학 본고사가 폐지되고 졸업정원제가 도입됐다.

등 세계적 기업에는 자국 변호사의 도움이 배경으로 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지원, 특히 영국의 경우는 자국 변호사의 세밀한 도움이 없었다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3대 국제중재기구 상임위원에 모두 선임돼

‘국제중재실무회’ 만들어 경험·지식 공유...파워그룹 형성

“변호사는 마케팅·프리젠테이션 능력 키워야” 후배에 조언

“이래저래 운이 좋으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조인 전체가 운이 좋죠. 이 길을 가게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운이 너무 좋은 겁니다. 국민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과도한 기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돌려 드려야 하나’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학창시절에 우수한 인재가 덜 갔던 분야,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가장 선두에서 있는 반면 많은 혜택을 누리고 공부 잘한다고 추켜쫓던 법조 분야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아이러니죠.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국제법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만나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한국변호사의 우수성’,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일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수한 인재에다 지리적 이점, 한국기업이 세계로 뻗어 가고 한류문화가 전파되고 있어 아시아의 법률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IBA(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지역 사무소가 서울에 오게 된 것은 김갑유 변호사 등 국제법무를 활발히 하는 변호사들의 힘이 컸다.

“한국은 법원이 믿을 수 있고 인권상황도 좋은데다 국제화가 잘 되어 있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본이 법률시장을 먼저 개방했다고는 해도 실질적 수준은 굉장히 떨어졌

니다.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인데도 미국법을 공부하고 미국변호사자격을 가진 ABA(미국변호사협회) 회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스탠다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합니다. 일본이 아시아 법률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 침략국가였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감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류에 대한 호감, 침략한 적이 없는 역사 등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그 분야에 대해 걱정할 때 세계적인 수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영화가 고사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한국영화, 지금 세계적 수준이잖아요. 할리우드에 대적할 만한 영화산업국가로 성장했죠. 의료인구 과잉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각국에서 수술받으려고 오는 의료강국이 됐죠. 이전 법조를 걱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달변은 한없이 이어져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았다. 그의 경험과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 같다. 실제로 그는 세계를 누비는 와중에도 지방 로스쿨 강연과 학회활동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성공한 전문 변호사라는 점이 아니라 나눌 줄 안다는 점이다. 판을 키워야 내 파이도 커진다는 걸 일찌감치 감지한 영리함, 그건 어디서 온 것일까?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분야에서 활약하는 장승화 서울대 교수, 김기창 고려대 교수, 김&장의 윤병철, 세종의 김범수, 울촌의 이영석 변호사와 대학 혹은 연수원 동기다. 친구들을 매력적인 국제중재 분야로 끌어들이고 경험을 공유했다. 장승화 교수와 함께 ‘국제중재실무회’를 창설했다. 한해 두해 쌓이며 로펌 변호사, 교수들을 모아 같이 공부하고 공유해 성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됐

다. IMF 이후 M&A 열풍이 지나간 자리 쏠아지는 중재사건들이 그들의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파워그룹이 형성된 것을 보고 일본과 유럽이 정말 부러워한다고.

“식당이 잘 되려면 외파로 혼자 해선 안 돼요. 먹자골목이 형성되고 소문이 날수록 잘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중재법무를 시작하던 10여년 전은 중국, 일본이 중재법무에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일하던 사람이 지금도 혼자 일하고 혼자 전문가입니다. 그 밑에 후계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게 혼자 잘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10년 전에 우겨서

“‘국제중재팀’을 회사 안에 만들었 어요.”

그게 2002년의 일이다. 오는 6월 15일 국 내최초로 중재팀을 꾸렸던 법무법인 태평양 의 중재팀 10주년을 기념해 ‘서울 Arbitration Lecture’를 개최한다. 공익법 인을 만들어 소리 없이 사회환원사업을 해오 는 태평양답게 로펌 명칭도 빼고 학술회의로 진행한다.

김갑유 변호사가 변호사를 한 지 25년, 중 재업무를 한 지 15년. 상전벽해를 실감하고 있다. 처음 중재팀을 만들자고 했을 때 주변 의 반응은 ‘그런 건 한국로펌이 할 일이 아니 야, 괜히 영미로펌 흉내나 내고 싶어 하는 군’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국내로펌이 중재 업무를 하고 중재팀을 앞다투어 만들고 있 으니 말이다.

“어떻게 중재업무에 발을 들이게 됐나 요?”

“첫 번째 중재사건이 떠오르네요. 진짜 하 기 싫는데 끌려간 거예요. 가보니 상대방 변호사는 옥스퍼드 나온 영국변호사로 중재전문가인데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정말 저도 ‘아, 저 말이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요. 근데 정신을 펴뜩 차리니 한국기업 사건 에 한국 법을 적용하는 사건인데 한국변호사 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기 업에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한국변호사잖아요? 아무런 대책 없이 나섰지 만 승소했죠. 몇 차례 승소를 거듭하다 보니 재미도 붙고 한국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분 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쉽게 이야기하고 운 때문이라는 식으 로 이야기하지만 불모지였던 한국 법률시장 을 세계로 돌려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은 불문가지. 사실 중재업무를 할 수 있는 로 펴름은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정도다. 한 국기업이 커지고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로펌 의 중재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제는 아시아의 굵직한 중재사건은 한국변호사들 이 맡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그렇게 한국 변호사의 중재실력을 인정받 게 된 것과 궤를 같이해 김 변호사는 세계적 중재단체의 상임위원을 맡게 됐다.

“남들이 맡고 싶어 하는 자리는 거의 다 맡 은 거 같네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하 하.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한국이 그만큼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순전히 한 국의 위상 덕분입니다. 주요 중재기관, 협의 체의 코트멤버(Court Member)라고 부르 는, 실질적으로 조직운영을 결정하는 상임위 원을 맡아왔어요. 제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 변호사들로 채우도록 하고 있고요.”

국제중재의 중심이라고 할 영국의 런던국 제중재재판소 상임위원은 5년 임기를 마치고 후임은 박은영 변호사(김&장)가 맡게 됐 다. 60대가 대부분인 35명의 상임위원 중 김 변호사는 가장 어린 나이였다. 2008년에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상임위원이 됐는데, 한국인 중재전문 변호사인 이재기 변호사(화우)가 이미 위원이었으나 김 변호 사가 한국의 위상을 볼 때 상임위원이 한 명 더 있어야 한다고 ICC중재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서 선임된 것 이다. 미국중재인협회(AAA)에서는 한국인 최초 이사이다. 흔히 ‘세계상사중재위원회’로 번역되는 ICCA는 1960년에 UN이 만든 국제중재기구로, 세계중재인협회라고도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2009년 우리나라 최초 로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그다음 해인 2010 년 아시아인 최초로 ICCA 사무총장으로 선 출됐다.

김 변호사의 성공은 개인의 영광이라기 보다는 한국 변호사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으 로 보아도 될 것 같다. 그에 필적할 동료, 후 배들, 우리 변호사 사회는 그런 실력 있는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에게 멘토를 물어봤다.

“얀 폴슨 ICCA 회장님이요. 스웨덴 태생 인데 어릴 때 아프리카에서 자랐고 미국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미국변호사면서 프랑스 에서 일하셨고요. 바레인 국적도 갖고 계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재인이면서 유대인 이 대다수인 중재분야에 비유대인으로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많이 도와 주세요. 60대인데도 정말 열려있으세요. 제 가 중재변호사들 모임에 가보면 어린 편이어 서 여러 분들이 도와주시고 잘 봐주셨어요.”

얀 폴슨 회장은 미국 하버드대와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현재 영국 로 펴름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의 국제중재 파트 장이며 2010년부터 ICCA 회장을 맡고 있는 국제중재 전문가다.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 미국 마이애미대 법학교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세계은행 행정재판소장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의 가장 강점은 운이 좋다는 것인데 그 운의 8할은 인복이라 봐도 될 것 같다.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김 변호사와 이야 기하며 느낀 점이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나를 돕도록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인맥이겠는가.

“저는 변호사를 점쟁이, 택시기사에 자주 비유해요. 점을 보러 가면 뭘 원할까요? 사 실 사주팔자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인터넷만 뒤져도 돼요. 어려움에 처해서 온 사람에게 갈 길을 이야기해주고 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의뢰인 의 입장에서 상황과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는 변호사와 정말 닮았 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한국법 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택시 기사에게 운전 잘한다고 칭찬을 할까요? 운 전 잘하는 건 기본입니다. 택시 안이 깨끗하고 친절하며 길이 막히면 왜 막히는지 쉽게 설명해야 칭찬받죠. 고객을 기본 좋게 모셔 야 합니다. 법률시장 개방이 돼서 한국변호 사의 능력을 의심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일 의 질은 최상인데 마케팅 능력, 관리능력은 외국계 로펌을 배워야 합니다. 배울 것은 배우고 정신 차려 일하면 충분히 경쟁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변호사란 점쟁이처럼 갈 길을 예언 하되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이냐 보다. 이렇게 단호하게 변호사의 서비스정신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변호사 중에선 드물다. 그의 뒤 를 따르고 싶어하는 로스쿨생이나 청년변호 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물었다.

“후배들, 로스쿨생들에게 강의하면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하느냐’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하느냐’를 물어요. 저는 학생이면 공부가 직업이니 열심히 공부하고 현·민·형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답



이라고 해요. 영어, 저도 잘 못했어요. 중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학원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 잘해서 승소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어 배우려면 돈을 받고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의뢰인에게 돈 받으면 절대 졸 수도 없는 현장에서 하루종일 영어 를 하고 들으며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보고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막 변호사 시작한 후배들에게 마케팅 능력과 프리젠테이션 능력 키우라고 말해주요. 소송은 오페라나 마 찬가지예요. 노래와 스토리는 바꿀 수 없는 데 누굴 캐스팅하고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지하게 재미없을 수도, 흥미진진할 수도 있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김 변호사의 강연에 감 명받은 학생들의 후일담이 쏟아졌다. 정말 실제적인 장래계획에 도움이 되는 충고라는 평들이다. 허세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 기해주니 나오는 반응들이다.

“제가 사람을 뽑을 때는 체력과 매력을 가장 중시해요. 순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힘 은 체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일의 기본 이기도 하고요. 매력은 뭐랄까, 설명하긴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애정이 드러 나는 게 아닐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요. 실력은 빌릴 수 있지만 매력은 빌릴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공비법을 알 수 있었 다. 그는 분명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 박신애 편집장

형법 중요 판례가 머리에 쏙쏙!!!

출간



〈 필수판례 99개〉

출간



〈 필수판례 109개〉

〈출간예정만화판례시리즈〉






이영욱 변호사의 동영상 강의 www.lec.co.kr

글 : 오영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그림 : 이영욱(변호사)



김도읍 새누리당·부산 강서구를

진정으로 지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를 선택해 주신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년 가까이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았던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된 부산 북구강서구를 지역은 현 국회의원이신 허태열 의원께서 내리 3선을 해온 곳이라서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딘 제가 공천을 받아 당선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다음에도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인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은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영화배우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반면, 저는 지역 주민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 신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문성근 후보가 지역을

다녀가면 금세 입소문이 났는데 이때마다 '김도읍이는 안 오고 뭐 하느냐'는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제가 이미 다녀갔는데도 말입니다.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자 더욱 더 부단히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며 제가 우리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교와 대학까지 나온 '토박이'이며 우리 지역의 정서, 역사, 문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지역의 낙후된 상황과 해결에 대한 열망이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우리지역 국민께 강조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국민께서 저를 뽑아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내내 주민들과 직접 접하며 정부

는 그런 국민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 네 가지는 꼭 이루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 경제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북구와 강서구 지역을 떠나 동네에서 되돌아오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탄탄한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신공항 가덕도 건설, 북·강서구의 도로교통 개선, 규제에 묶인 강서구의 그린벨트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화명신도시와 명지신도시의 교육중심도시 육성, 다대~양산 도로 조기 완공 추진, 지역 내 레저문화산업 창출, 부산신항 배

장서 정치를 바로 세우며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콩나물, 봉어빵까지 팔고 하도급 중소기업이 3%의 이익률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대기업 제재와 중소기업인을 위한 상생발전의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시키겠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관심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19대 국회는 정치문화를 선진화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균형 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될 주요한 시기입니다. 공안, 외사부 검사 출신답게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올곧은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며 사회적 약자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법률전문가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열 법률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낙후된 북구, 강서구 지역의 경제발전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 각종 법률의 제·개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지식경제위원회나 국토해양위원회에 지원하여 우리 지역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아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지역민들의 준엄함 명을 성실히 받들고자합니다.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

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문제라든지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사건때문에 민심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주민들께서 제게 가장 많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제발 국회에 가면 '싸우지 말라' 였는데 여기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 즉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게 부여된 신성한 소명이 바로 '지역의 삶을 윤곽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의회민주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달래줄 수 있

후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속 추진,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 우리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대변하듯 추진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인근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선진 정치문화를 확립시키겠습니다. 줄세우기, 돈 봉투, 폭력, 정쟁으로 얼룩진 기존 정치에 국민은 괴리감을 느끼며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검사시절의 기개와 강단으로, 40대의 패기와 젊음으로 쇄신에 앞



경대수 새누리당·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먼저 함께 경쟁해 주신 민주통합당 정범구 후보님과 선거캠프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정체된 지역현안의 변화를 꿈꾸고, 새로운 발전을 희망하시는 중부4군 주민 여러분의 열망이 승리한 것이고, 저와 제 아내에게 지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사랑과 가르침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번에는 바뀐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제가 내걸었던 슬로건은 제가 임의대로 만든 슬로건이 아니라 지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주민 여러분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민 여러분의 이러한 간절한 명령을 신성한 책무로 느끼면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23년 간의 공직경험과 다양한 중앙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드시 제가 드렸던 공약사항과 약속들을 실천해 내겠습니다. 또한 저는 올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충청북도와 중부4군이 사랑하고, 충청북도와 중부4군을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돕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김정희 총괄선대본부장님, 전현직 당원 여러분, 선거사무장님, 그리고 선거운동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승리는 저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선거캠프원들의 승리입니다.

구석을 누비면서 농민,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가족 등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여 왔고 그 과정을 통하여 서민들의 애환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고민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장과정, 검사로서의 오랜 공직 생활과 변호사생활,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지역주민들과의 접촉과정들을 통하여 저는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소홀하며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가 미흡하여 주어진 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위와 같은 자기 깨달음을 잊지 않고 임기동안

두 선거 모두에서 중복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4·11 국회의원 총선에서 충청북도가 과반수 이상의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 당이 원하는 어떠한 임무와 역할이든 성실히 수행하여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미려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로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수행할 가장 큰 역할은 입법,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역할 모두는 검사와 변호사를 경험한 저에게 익숙한 분야임엔 틀림없지 않나 싶고 약 23년간 검사로서 쌓아온 경험, 햇수로 7년간 변호사로서의 경험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은 기존 법률에 대한 공백상태를 만들어내고 있고 때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공부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신성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19대 국회구성이 언제쯤 마무리되어 제가 앞으로 어떤 상임위원회에 소속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든 제가 소속될 상임위원회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현안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항상 깨어 있는 낮은 자세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제가 앞으로 맡아야 할 무거운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번엔 바꾸겠습니다

끝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들어도 미소를 잃지않고 못난 남편 곁을 지켜 준 제 아내와 아빠를 위해 힘든 선거일정을 소화해 준 두 딸과 아들에게도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흠어머니와 형님들과 함께 방 2칸짜리 산동네 판자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약 23년 간 검사로서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변호사로서도 5년이 넘는 기간을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4년여 동안 우리 중부4군을 구성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하는 국회의원, 제 지역구인 중부4군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여러분의 삶을 발전시키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올 12월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속한 충청북도는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고려할 때 당락을 좌우했던 핵심 전략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39만표 차이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57만표 차이로 승리하였는데,

주요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파기환송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 공
사대금채권의 귀속주체 및 형태

공사대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1996년 1월 8일 이후부터 체결된 공동도급계약에는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적용됨에 따라, 도급인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서도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도 그들 상호 간의 계약인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를 참고하여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별로 별도 기재한 각자의 거래계좌로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내용이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정되거나

해를 취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옳고, 확정판결을 거쳐 기판력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이며, 장기간 이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여 온 판례들을 뒤집어 물권 내지는 물권자의 보호에서 후퇴하여야 할 이론적·실무적인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선형소송에서 본래적 급부의무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현존함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인무효등기가 취득시효 완성된 이상 물권적 청구권에 따른 전보배상청구 안 돼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선형소송에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다수의견에 대해서, 청구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인지 아니면 물권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에서 이를 허용하여 채권에 못지않게 물권을 보호하는 건

는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이 있음.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양창수의 보충의견이 있는데, 그 취지는 물권적 청구권은 애초부터 급부의 청구를 중심적 내용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과는 그 기본적 지향을 달리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를 인정할 필요가 바로 없게 되어 소멸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실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더 이상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로써 바로 그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임.

“공사대금 채권은 구성원 지분에 따라” 상호합의 건설사 공동수급체 약정은 유효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2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가계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선금을 제외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이하 '기성대가 등'이라고 한다)를 공동수급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의견에 대해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약정은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996년 1월 8일 개정 이후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공동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경우에만 그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의 별개의견이 있음.

손해배상(기)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제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상고기각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이 통지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한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더구나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

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파기환송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
극)

새 법률을 소개합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2. 10. 제정 / 2012. 5. 11. 시행

- 남북한 주민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재판관할에 관한 내용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부부가 남북으로 갈라져 새로 혼인하여 중혼이 된 경우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 민법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인지청구는 부모가 사망하면 그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데, 분단으로 인하여 소 제기가 불가능하였던 경우에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종선고를 받거나 사망선고가 되었는 데 북한주민이 살아있어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자까지 반환하여야 하고 제3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남한주민이 반환하여야 하는 범위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로 하고 제3자 보호를 위

하여 거래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북한주민의 경우 부동산 등의 원물을 관리하고 처분·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남한주민의 경우에는 민법상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에도 북한주민에게 가액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남한주민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대하여 반드시 남한주민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재산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남한 내 재산을 북한주민이 직접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가져가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2. 2. 22. 제정 / 2012. 5. 23. 시행

-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

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일부개정 / 2012. 7. 2. 시행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단, 국내 취업활동 기간 중에 내국인 고용 곤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된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2. 5. 14. 일부개정 / 2012. 11. 15. 시행

-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2. 5. 14. 일부개정 / 2012. 5. 14. 시행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를 도로, 철도 및 하천 개수로(開水路)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토지로 한정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공무원임용령

2012. 5. 7. 일부개정 / 2012. 5. 7. 시행

- 국립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서 해당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으로 확대하고, 종전에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던 대학 외의 인사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 신진우 대한변협 사무차장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판례 정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해설

방조범의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방조범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긍정설은 만약 방조행위가 있었지만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효과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는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부정설은 방조행위만 있으면 그것이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법판결은 긍정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총평

사람이 너무 일찍 죽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괴롭고 두렵게 하는 것은 없다. 살 만큼 살아주는 것이 가족, 친구, 친지,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이다. 따라서 자살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다.

글 :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원장 / 그림 : 이영욱 변호사

출처 : 만화 형법 판례 “형법각론”【법률저널】



양삼승 변호사의 法街散策

오관의 위험은 법관의 숙명이다

한해 한해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이 더해가면서, 특히 변호사로서 재판을 받는 세월이 길어져 가면서 새롭게 느끼게 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 법률가들이 오랫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여 온 민사·형사 재판의 기본원칙들, 즉 수학으로 비유해 말하자면 공리나 정리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의문을 품어보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서 법률을 배우게 되면서부터 민사재판의 기본원칙은 당사자주의이고 변론주의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판사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고 알아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한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효과적이라는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적 사고보다는 자본주의적 사고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특히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을 보면 비논리적·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한 누구나 자기 일을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으로(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도 분명

하다. 따라서 법관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합리성 기준만을 내세워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자칫 진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가 비이성적인 행동과 말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진실인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변론주의와 입증책임분배법칙 등 민사재판의 기본원칙은 진실 발견을 위한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니

고, 진실발견을 최고목적으로 한 원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관의 위험성을 당사자 본인의 잘못으로 귀착' 시키고 '법관에게는 면책의 길을 열어주는' 면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각도를 바꾸어 형사재판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의심스러운 무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전문증거배제 등 어찌 보면 형사재판에서는 진실발견 자체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인권보호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헌법적 결단이고 역

사적 선택인 만큼, (어쩌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를)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보아도, 또한 (피의자의 숨소리에서 유죄를 확신한) 검사가 아무리 억울하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역시 판사의 오관에 의한 유죄판결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처럼 법관은 그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그 판결이 진실에서 멀어질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그의 숙명이라면, 법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다.

먼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판사가 할 일, 안 할 일

첫째, 법정에서 나타난 모든 자료들이 전부 진실을 대변한다고 쉽게 속단해 버려서는 안 된다. 앞서 본 형사재판의 기본원칙 때문에, 혹은 민사재판 당사자의 한쪽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또는 출중하기 때문에 진실에서 어긋난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들의 말이나 주장이 비록 '비논리적이기는 하지만 진실에 부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에 나타난 자료를 철저히 논리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판사로서 존경받을 태도이기는 하나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

둘째는 입증책임분배의 법칙이라는 것이 진실발견을 위한 '차선책'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이 원칙으로 도피'해 버려서는 안 된다. 즉 진실발견을 위해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하급심 법관으로서 내가 내린 판결이 상급심에서 깨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인정이 잘된 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상급심으로 갈수록, 사실인정에 관한 한 진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

첫째, 법관은 진실발견을 위한 최대의 수단인 '자유심증주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에는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핵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 신이 준 재능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실인정에 관한 한 법정에서건 판결문에서건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말만 할 필요가 있다. 말이 많아지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에게 책을 잡힐 위험이 높다.

결론적으로 법관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참을성 있게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 둘째는 사실판단이 아닌 법률판단·가치판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에 헌법판단·법률판단만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ssyang@hwawoo.com

로스쿨 통신



이창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계절의 여왕인 5월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화사하고 즐거웠던 축제의 기간도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고, 생각보다 시험기간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5월 말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잔인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로스쿨생의 5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하계방학의 실무수습기관을 선택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작년까지 실무수습기관을 고르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아주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져왔다. 법원·검찰·대형 로펌은 어느 곳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고, 변호사사무실 등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 크고 잘 알려진 기관이 더욱 근사해보였고, 그곳에서의 실습이 우리를 더욱 근사하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에 젖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번 변호사시험 후 선배들이 하나들 취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무수습에 대한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실무수습

이 단순히 실무를 배우러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무척이나 강해진 것 같다. 선배들의 취업에는 학교와 교수님들의 특별한 노력이 많이 있기도 하였지만, 실무수습 등을 통한 자기 홍보 효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방학을 통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업무를 체험하고, 과제 등의 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취업과 연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로펌 등의 실무수습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확률보다 월등히 높아,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실무수습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법조계의 '메이퀸'을 위해

때문에 로스쿨생들은 취업과의 연계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변호사사무실 실습에 집중할 것인지, 법원·검찰 등 공공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해 다양한 실무 사례를 경험해볼 것인지, 로펌 실습을 통해 특성화된 분야의 깊이 있는 실무를 체험해보거나 공익기관에서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연령·경력·성별·관심분야 등에 따라 자신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역 또는 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간 공지해주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관련 공지사항을 주시하면서 방학 학습계획과 연계하여

실습계획을 세우고,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도 실무수습기관을 알아보고 제출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스스로에 큰 영향을 가져다줄 실습기회를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5월은 수험생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1회 변호사시험 이후로, 고시가에서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사법시험 수험서로 공부를 해나가던 로스쿨생들로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격률이 낮아질 변호사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에 대한 열망이 적지 않았다. 경험을 통

은 날에 치르게 될 뿐만 아니라 선택형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후사법에 대해서도 선택형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고 사법시험에 없는 기록형 시험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부해야 할 양은 사법시험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반면에, 학교수업을 듣고 방학에는 실무수습을 나가는 것 등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학습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아마 기존의 사법시험 수험서보다 더 핵심을 요약해놓은 수험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어려움은 줄어들게 되겠지만, 효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뛰어난 수험서를 선택하는 데는 많은 고민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시험시행 초기라면 더욱 말이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 대학가에서는 '메이퀸'을 선발하곤 했었다. 대부분 신문 한쪽 귀퉁이나 학보에서 보았을 법한 그 '메이퀸'이 되기 위해서 그 학생은 적어도 그 학교에 합격할 정도 이상의 공부를 했을 것이며, 외모를 가꾸고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남모르는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이다.

법조인으로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로스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로스쿨생들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만 매혹될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메이퀸'이 되기 위하여, 짧은 수험기간내의 방대한 학습량을 이겨내고 실무실습 등을 통해 졸업 후 빠른 시간 내에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더 필요한 때이다.

cptleecm@gmail.com

MY (성공) PARTNER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http://career.koreanbar.or.kr>



1. 기존 변호사들은 물론, 사법연수생·로스쿨 재학생들도 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변호사 취업정보 사이트입니다.
2. 일반 채용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개업·인턴십 정보 등, 변호사·예비변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진로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건검색과 구직자와 채용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구직자는 원하는 일자리를, 채용자는 원하는 인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커뮤니티' 내 변호사전문 익명게시판을 통해 새내기 변호사와 선배 변호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경험 및 노하우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5. 취업가이드, 자료실 등을 통하여 각종 서식, 기재례, 업무매뉴얼 등 변호사 업무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